표

시흥거모 A-10블록 공공분양주택
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안내

- 「주택공급에 관한규칙」 제35조, 제42조, 제45조에 따른 **시흥거모 A-10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대상자** 선정 관련 안내입니다.

-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의해 **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됩니다.** 또한 **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당첨자는** 해당기관의 추천여부, 신청접수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**계약체결이 불가**하며,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**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**합니다.

- 시흥거모 A-10블록의 경우 **주택형(타입)별(51A, 59A, 59B)로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한 주택형(타입)으로만 특별공급 신청접수일에 청약신청하셔야 합니다.**
  -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, 지역균형 **특별공급 신청 시 선택한 주택형(타입)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 불가**함

-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**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를 통해 인터넷 청약 신청**하여야 하고,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**구비서류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  ※ 인터넷 청약 미신청 및 당첨자 서류 미제출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

-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, 해당 기간 및 상세 내용은 LH 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의 **입주자모집 공고문(2026.12월 공고 예정)을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-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청약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'공급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를 충분히 안내·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, **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(별도 기간 연장 없음)**

※ 우리 공사에서는 공급일정과 관련하여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별도 개별안내를 하지 않으므로, 안내문 외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숙지하고 특별공급 신청접수일에 반드시 청약신청을 하여야 함을 추천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Ⅰ 공급개요 및 일정

□ **공급대상** : 시흥거모 A-10블록 (경기도 시흥시 거모동, 군자동 일원)

□ **공급현황** : 공공분양 총 301호

(단위 : ㎡, 호, %)

지구	블록	공급유형	주택형(타입)	세부타입	공급면적(예정)			건설호수
					주거전용	주거공용	소계	
시흥거모	A-10	공공분양	**51A**	51A	51.97	21.3402	73.3102	**56**
			59A	59A1	59.77	24.5430	84.3130	**127**
				59A2	59.83	24.5677	84.3977	
			59B	59B1	59.26	24.3336	83.5936	**118**
				59B2	59.73	24.5266	84.2566	

※ 기관별 신청가능 주택형(타입) 및 배정 물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**공급금액** : 미정 [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]

□ **공급일정**(예정)

구 분	일 자 (예정)	참고사항
입주자모집공고	**'26.12월**	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에서 공고확인 및 **인터넷 청약 접수**(**현장접수 불가**)
특별공급 청약접수	**'27.01월**	

※ **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** 반드시 추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"입주자모집공고문"을 통해 공급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**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위 접수일자에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**해야 합니다.

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□ **기본요건**

○ 입주자모집공고일('26.12월 예정) 현재 **수도권[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]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**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/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)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및 제42조, 제45조에 의거, **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(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)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추천한 자**

당첨예정자	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'당첨자'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'당첨자'가 되는 분
예비대상자	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'예비자'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'당첨자'가 될 수 있는 분

※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기준

아래 **[무주택세대구성원]** 전원(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)이 다음 **[주택 및 분양권등]** 각 목의 요건을 **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**

[무주택세대구성원]
가. 주택의 공급을 **신청하려는 사람**(이하 '주택공급신청자'라 함)
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**배우자**
다. **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**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**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, 이하같음)**
라. **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**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**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, 이하같음)**
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**배우자의 직계비속**

[주택 및 분양권등]
가.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나.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 하고 있지 아니할 것
다. 나목에 따른 지위(이하 "분양권등"이라 한다)를 승계취득(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
※「민법」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,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.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.

※ 세대구성원 중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,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가.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
나.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이 확인한 사람
다.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확인한 사람

※ 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 구비여부

추천대상자	입주자저축 구비여부
국가유공자, 장애인, 지자체 철거민, 지역균형발전	필요 없음
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 제대군인, 중소기업근로자,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	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

□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○ 입주자모집공고일('26.12월 예정) 현재 수도권[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]에 거주하지 않는 분

○ 입주자모집공고일('26.12월 예정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

○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(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,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, 토지임대부 분양주택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)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

○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또는 동규칙 개정('10.2.23) 이전에 "3자녀 우선공급" 및 "노부모부양 우선공급"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

(다만, 동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, 제27호의2,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)

○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)에 있는 분 등

○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(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,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/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, 지역균형발전은 제외)

※ **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,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**

□ **당첨자 선정방법**

○ **신청주택의 동·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,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동별·층별·향별·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**됩니다.

☞ **미계약, 미신청 동·호 발생 시에도 동·호 변경 불가함**

○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%를 예비입주자로 선정(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으로 정함)하며, 당첨 취소·공급계약 미체결·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합니다.

☞ **단,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한 예비대상자에 한함**

○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(신혼부부, 생애최초, 다자녀가구, 노부모부양, 신생아 포함)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,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% 범위에서 '특별공급 예비입주자'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

☞ **단, 특별공급에 신청 미달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대상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.**

III 유의사항

○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·통보되었다 하더라도 **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에서 별도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**

☞ **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불가**

○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,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○ **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**이므로, **다른 특별공급(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노부모부양, 신생아 등)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**하며 **신청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(배우자 포함)이 중복·교차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**됩니다.

○ **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므로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** 처리됩니다.

- 단, 예비대상자는 일반공급만 중복신청이 가능하며,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.

○ **주택형(타입)별(51A, 59A, 59B)로 접수**하며, 동·호 배정은 동별·층별·향별·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.

☞ **잔여 동·호 발생 시에도 동·호 변경 불가**

○ 주택타입 세부사항 등은 공고일 이후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팸플릿 및 사이버견본주택 주소는 공고일 이후 LH청약플러스에 공고문과 함께 게재 예정)

○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,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됨(통장 사용자는 재사용 불가, 특별공급 1회 제한)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(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, 토지임대주택,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)에 **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**,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, 수도권 거주요건, 재당첨 제한 등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**부적격자(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)로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(계약체결 불가,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)을 받으니**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, 기준, 일정, 방법,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, **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** 수도권(투기과열제구 제외)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**주택건설지역(시흥시)의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(당첨자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약 신청하는 것이 아님)**한 것으로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각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확인 후 청약신청일자에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청약 신청하고 서류제출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**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**될 수 있으며, 해당 기간 및 상세내용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본 안내문은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대략적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, 공급일정, 유의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시흥거모 A-10블록 공공분양 문의
▸ **LH 청약플러스 : apply.lh.or.kr** ▸ **분양 문의사항(LH 시흥거모 A-10블록 주택전시관) : 031-250-8181** **※ 추천 대상자 선정 관련 내용은 각 추천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.**

붙 임 | **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, 평면도**

본 자료는 2026.12월 입주자모집공고(예정)를 위해 준비 중인 자료로서 미확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상태이며,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확정된 공급주택 관련 이미지 자료 등은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공되는 팸플릿 등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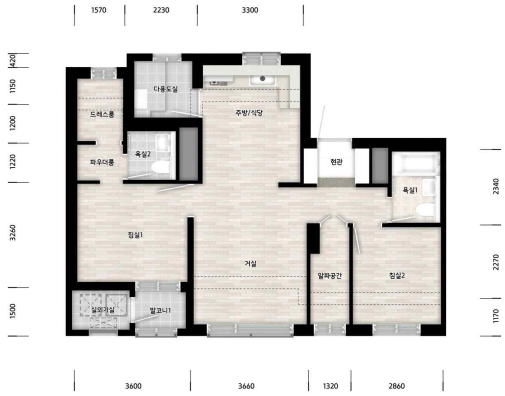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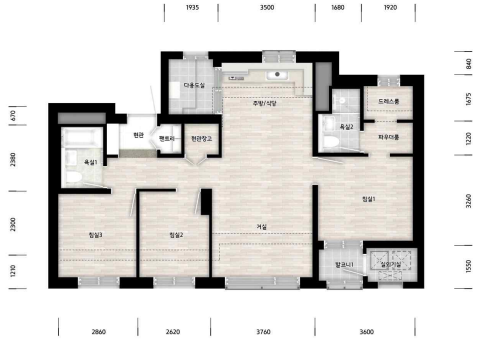
□ 위치도



□ 토지이용계획도(시흥거모)



※ 주택형(타입) 및 세부평형 등은 사업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일 이후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

주택형(타입) : 51A	주택형(타입) : 59A	
51A(56세대)	59A1(78세대)	59A2(49세대)
		

주택형(타입) : 59B	
59B1(46세대)	59B2(72세대)
	